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안내

1/2

※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분은 서류접수 기간 내 당첨자 삭제 및 계좌부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접수 기간 이후 부적격에 따른 당첨자 삭제 및 계좌부활 신청이 불가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만 정당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대상	서류발급기준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청약자(본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발급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청약자(본인)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용도 : 주택공급신청(계약)용
	○		주민등록표등본(전체포함)	청약자(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청약자(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원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비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청약자(본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청약자(본인)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복무확인서	청약자(본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군복무기간 10년이상 명시)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		해외체류(단신부임) 관련 입증 서류	청약자(본인)	• 주택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날인),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①, ② 모두 반드시 제출)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세대원 및 미성년 자녀	• 세대원 및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 확인 ※ 제출 대상자의 출생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 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안내

2/2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대상	서류발급기준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청약자(본인)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발급처:국민건강 보험공단) ※ 기록대조일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 부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청약자(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서류 제출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와 혼인 전 출생자녀를 혼인 중 출생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		대상자녀	• 신생아 우선공급인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	청약자(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서류에 한함) (출산예정일, 질병코드번호, 담당의사명, 의료기관 등록번호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 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 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1년 이상 등재되어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비사업자 확인각서	청약자(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사업자 확인각서 제출시 "신고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사실증명서(신고사실없음)		
		○	부동산 소유현황 및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청약자(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공시가격 확인서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 상기 구비서류 외 추가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청약자	• 본인발급에 한함 / 용도 : 위임용(본인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위임 불가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와 대조 必
	○		위임장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필수)
	○		신분증	대리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무주택 소명 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청약자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공통/추가 서류 외 대리인 신청 시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접수 시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전체포함' 또는 '상세표기'로 발급하여야 하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26.)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제출 서류 중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이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 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서류 접수 시 자격 검증을 위해 안내 서류 외 추가로 검증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 하면 폐기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 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 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합니다.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월평균 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보유 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구분		자산 보유 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건축물 종류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주택 외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 (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증빙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 자료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전년도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출산휴가,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매월신고 납부대상자 확인' 으로 발급) 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 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지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상기 방식 역시 불가하다면 근로(연봉)계약서상의 총급여를 월할계산하여 추정)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①, ② 해당직장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 보육교사 등)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팩스불가) ②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③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의 해당	①, ③ 해당직장 ② 세무서
	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에 한함)	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신청서 및 확인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직인날인)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 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 ③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별 소득자별 근로자 원천징수부	①, ③ 고용24 홈페이지 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①, 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공고일 이전)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국민연금의 경우 공고일 이전 가입만 인정 ※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공고일 이전 신고만 인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② 전년도 재무제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③ 해당직장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 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① 해당직장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 주민센터
비정규직,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직인 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 날인) ※ 금년도 신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프리랜서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및 위촉(해촉)증명서	① 세무서,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
무직자, 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당사 주택전시관에 비치 ②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필수 제출 ※ 전년도 소득이 없고, 현재 무직인 경우 반드시 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금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직인날인) -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폐업 증명서	① 접수장소 (당사 주택전시관) ② 세무서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26.)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 및 휴직 유형(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소득증빙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출산휴가, 휴직했던 분은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직인날인)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입증 제출서류

해당자적	소득입증 제출 자료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③ 해당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 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④ 농지원부,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 이택스, 위택스 ④ 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 토지이음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전국단위로 재산세 내역 발급)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추천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상기 자산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1.26.)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포함합니다.